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3. 22 선고 2020가단2148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해
담당변호사 박상욱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2019. 6. 26.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9회합1010 법인회생 사건에서 시인된 회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2014. 5. 26.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간 2015. 5. 22.까지(이후 2019. 5. 17.까지 연장됨)로 하여 D가 E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D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원고는 2014. 5. 26. D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D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E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 (1) D가 2019. 5.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E은행의 보증 이행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9. 9. 5. 합계 65,920,844원(=원금 64,800,000원+이자 1,120,8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며, 미수위약금은 234,340원,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766,073원이다.

(3) 따라서 원고가 D와 B에 대하여 구상할 금액은 67,921,257원(=대위변제금 65,920,844원+미수위약금 234,340원+법적절차비용 1,766,073원) 및 그 중 65,920,84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B의 처분행위 및 무자력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9. 4. 9.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B은 2019. 6. 26.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날짜 확정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9.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C의 회생절차

(1) 한편 C은 2019. 8. 5. 부산지방법원 2019회합101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C은 25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시인하였다.

(2) C은 2020. 11. 10.경 회생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회생담보권채권을 일부 변제하면서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외에 달리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30,000,000원을, 주식회사 G에 100,000,000원을, C에 250,000,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위 회사들의 대표자인 H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합계 38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가 배우자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나중에 근저당권자가 B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형식을 빌려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바로잡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는 피고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애초에 B의 책임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도 없었다.

3. 판 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J은행,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6254 판결 참조),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그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30,000,000원을, 주식회사 G에 100,000,000원을, C에 2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380,000,000원 대여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C은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과 피고와 H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C에 대한 대여금 250,000,000원에 대한 채무만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받은 채권은 C에 대한 2018. 3. 15.자 50,000,000원, 2018. 3. 30.자 20,000,000원, 2018. 4. 10.자 150,000,000원, 2018. 6. 8.자 20,000,000원, 2018. 6. 22.자 3,000,000원, 2018. 7. 3.자 7,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다.

(3) 피고는 자신의 K은행(이하 'K은행'이라고만 한다)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C의 대표이사인 H의 계좌로 2018. 3. 15. 50,000,000원, 2018. 3. 30. 20,000,000원, 2018. 4. 10. 150,000,000원, 2018. 6. 8. 20,000,000원, 2018. 6. 22. 3,000,000원, 2018. 7. 3. 7,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는 B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B과 별도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는 피고의 수업료 수입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으며, 피고는 그 수입이 모이면 한꺼번에 자신의 위 K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에 대한 대여금의 출처는 아래 L으로부터 차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인다.

(5) 피고는 2018. 4. 10.자 대여금 150,000,000원은 동생 L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는 2018. 4. 6. 피고의 위 J은행 계좌에서 입금된 19,379,143원과 2018. 4. 9. L으로부터 입금된 130,000,000원 등이 합쳐져 잔액이 151,414,9577원에 이르고, 피고는 2018. 4. 10. 위 돈에서 H에게 1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6) H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는 H의 개인 계좌이기는 하나 C의 운영자금 등이 거래되는 계좌로, H은 위 계좌를 통하여 채권자로부터 C의 차용금을 지급받고 채권자들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그 대출이자는 매월 말일 또는 매월 15일에 대량으로 한꺼번에 출금된 것으로 보이고(거래구분에 'B대량'으로, 출금메모에는 '대출이자_매월말' 또는 '대출이자_매월 15일'로 표시되어 있음), 피고의 계좌에도 매월 말 H의 위 J은행 계좌로부터 대량 출금된 대출이자 중 1,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이자 외에 H이 개별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자신의 계좌에 피고에 대한 대출이자로 표시하고 출금한 내역도 발견된다[예를 들어,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중 26, 31면(위 H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8. 6. 4. 200,000원, 2018. 7. 10. 1,200,000원의 각 출금메모에 '대출이자A'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피고는 2014년경부터 H 또는 H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H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가 제출한 각 차용증들이 거래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를 대여의 당사자로 보고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8) C은 법인으로서 재무관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법인의 부채를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C의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담당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재무관리팀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 2018년 9월 내지 10월경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대여와 관련된 차용증을 하나씩 보면서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면서, C에 대한 대여금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는 피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I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9) C은 채무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4월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일에도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처럼 한꺼번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B이 사해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오히려 애초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1)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기의무자가 아니라 등기관리자(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별지]

근저당권의 표시

소의 주식회사 C 소유의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소의 B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9. 4. 9.자 설정계약(채권최고액 380,000,000원)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9. 4. 9. 접수 제21409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

부동산 목록

1. [토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M 대 600㎡
2. [건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M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N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9. 4. 9.로, 보증사고 발생일(2019. 5. 16.)로부터 불과 약 한달 전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2019. 6. 26.)로부터 약 두 달 보름 전이다.